

미국의 이란 추가제재 법안내용과 향후 전망

1. 개요

-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안(H.R. 2194, 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이 2010년 6월 24일 미 의회 승인을 거쳐 2010년 7월 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음.
 - 이번에 발효된 이란 제재법안은 이란에 정유와 정유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이란 혁명수비대 등 미국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관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미국 은행의 경우 해외 자회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제재 내용 및 강도가 지난 6월 채택된 UN 안보리 4차 제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법안은 정유제품 관련 제재, 금융부문 제재 이외에도 미국 주·지방 정부의 자산이 이란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투자된 경우 주·지방 정부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과거 미국 대통령의 면제 부여권 (waiver) 등으로 이란의 원유·가스산업에 U\$20백만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발효된 법안에서는 대통령의 면제권 부여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 1996년 제정된 이란제재법(Iran Sanctions Act) 보다 확장·개선되었음.

- 즉, 이번 법안에서는 이란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위반한 기업들의 명단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 아울러 대통령이 특정 기업에 대해 면제권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면제권 부여로 인해 미국 안보에 돌아오는 혜택과 타당한 이유에 대해 의회에 보고토록 명시하고, 면제기간도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2. 포괄적 이란 제재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가. 제재법안의 구성

- 이란 제재법안은 ① Title I (제재), ② Title II (이란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회수), ③ Title III (상품, 서비스, 기술의 이란으로의 이전 금지), ④ Title IV (일반조항) 등 4개의 타이틀로 구성되어 있음.

나. 제재법안의 주요 내용

□ Title I (제재)

- Title I에서는 ① 이란 혁명수비대를 비롯하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이란 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② 이란에 정유를 판매하거나 이란의 국내 정제부문을 지원하거나 이란의 에너지 부문 개발을 돕는 상품, 서비스 또는 노하우를 판매하는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재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의 3가지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첫째, 미국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 금지
 - 둘째,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금지
 - 셋째, 미국내 자산거래 금지

- 또한 미국은행의 해외 자회사가 이란 혁명수비대 등과 거래하는 경우 모회사가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민사상 벌금은 U\$250천 또는 실제 거래금액의 2배이며, 형사상 처벌의 경우 거래당 U\$1백만 벌금 또는 최고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음.

□ **Title II (이란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회수)**

- Title II는 미국 주·지방정부의 자산이 이란 에너지 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된 경우 주·지방정부가 이러한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Title II에서 명시한 투자회수와 신규 투자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이란 에너지 분야에 대한 U\$20백만 이상 투자, 대 이란 유조선 제공, 원유,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및 유지, 금융기관의 이란 에너지 분야에 대한 U\$20백만 이상 신용 제공 등

□ **Title III (상품, 서비스, 기술의 이란으로의 이전 금지)**

- 이 조항에서는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또는 테러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기술을 이란으로 재수출, 환적, 이동, 이전하는 정부에 대해 미국국가정보국이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미국 대통령은 해당 위반 국가에 대한 미국기업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음.

□ **Title IV (일반조항)**

- 이 조항에서는 미국의 이란제재법 종료시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란이 국제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미국의 테러지원국가 지정 명단에서 해제되는 경우

- 이란이 핵·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과 그 발사기술을 개발하거나 획득하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경우

3. 향후 전망

가. 이란정부의 단시일 내 입장변화 가능성은 낮음

- 이란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제재법안에 대해 저항적인 비난으로 일관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신규 제재 발효로 국내·외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 정유 관련제재가 강화될 경우 휘발유 가격 인상 등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
 - 이란은 세계 2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5위의 원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정제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휘발유 소비량의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계속되는 UN, 미국, EU 등의 제재로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가스 개발과 정유 사업 등에 필요한 핵심 기자재 공급에 심각한 애로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
- 국제적인 고립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 결국, 이란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서방과의 물밑 협상 노력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현재의 이란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 가시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나. 제재법안 적용과 해석에 관한 논란 지속 가능성

- 그러나 포괄적 이란 제재법안은 제재 위반의 내용 등에 대한 해석과 효과에 있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며, 미 행정부는 법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작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10월 1일경에 WMD와 테러리즘 관련 외국은행에 대한 조치 등 이행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안 적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과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재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기존 사업이라 하더라도 신법을 위반하였다는 정보가 접수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이를 조사하여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기존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법 적용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다만 제재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사업에 신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기존사업의 형식이 지속사업(continuing work)이 아닌 분할거래 (separate transactions) 방식인 경우, 신법 발효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예를 들어 신 제재법안은 항공기유를 제재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특정 회사가 기존계약에 의거 7월 1일 이후에도 이란항공사에 항공기유를 계속 납품한다면 동회사는 신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반면에 신법 발효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한 사업이 유조선 건조와 같이 지속사업 형식일 경우, 실제로 유조선을 이란측에 인도하는 시점이 신법 발효 이후가 되더라도 이에 신법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는 없다는 판단임.

다. 신 제재법안 파급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타국 기업·은행들의 동향 등 전반적인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송금과 외환거래 등에 대한 제재가 더욱 심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두바이, 중국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이란 제재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 재무부의 데이비드 코헨 (David Cohen) 차관보는 7월 14일 일본의 3대 은행인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Mizuho Financial Group Inc.,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Inc.를 방문하여 이란은행 및 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한편 중국, 러시아 등은 이번 미국의 추가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자료제공 : 이란 주재원>

문의 : 책임조사역 박대원 (☎02-3779-6651)

E-mail : parkdw@koreaexim.go.kr